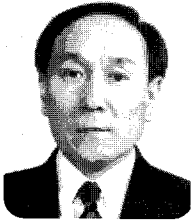




외국인 농업연수생 신청 현황과 연수생 활용 관리



이 현 주 팀장
농협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1. 외국인 농업연수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절차

- 외국인농업연수생을 도입하기 위한 제반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지침과 농협의 운용요령이 제정되었고, 이해당사자간에 체결해야 할 표준계약서 4종류도 마련되었다.

- 그리고 농업연수생 활용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하였으며, 외국인력을 모집하여 파견하는 송출기관을 선정하고 인력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지금 송출국가는 파견할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연수생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입국사증을 발급받는 일과 입국후 국내에서의 교육, 그리고 연수생을 신청한 농가가 연수생을 인수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 그동안 농촌현장에 일손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연수생이 들어오기를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농업경영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외국인농업연수생 활용 신청 현황

가. 신청현황

- 지난 3. 17일부터 5. 10일까지 전국 농협 시군지부에서 농업연수생 활용신청을 접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도입계획(3,200명)에 미달하여 적격신청자 전원을 연수업체로 선정하고 추천서를 발급하였다.

〈표 1〉 외국인농업연수생 신청현황

신청 접수	검토결과			신청 연수업체(연수생 수)						
	부적격	보류	적격	시설원예	시설버섯	젓소	한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458 (1,299)	35 (99)	56 (133)	367 (1,067)	93 (282)	22 (84)	36 (58)	10 (26)	177 (459)	3 (8)	26 (110)

나. 계획보다 신청이 저조한 사유(추정)

• 외국인불법체류자 출국유예 조치(03. 8월말)로 현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경영체가 연수생 활용을 유보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음.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농업연수생으로 대체하고 싶어도 3년 동안 연수생을 활용할 수 없음, 따라서 불법고용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는 농업연수생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금차에 필히 신청하시기 바람.

• 농업연수제도상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적 이행절차 때문에 농업경영체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외국인농업연수제도는 기존의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신규로 농업분야에 도입된 형태이므로 다소의 행정적 번거로움은 피할

수 없음.

• 농업연수생 활용대상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 다른 농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

→ 현재 농림부에서 대상업종 확대를 검토중에 있음.

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연수생과 동행하여 지문날인하여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 연수생교육 실시

• 농업경영체는 배정된 연수생을 대상으로 작업장 안전수칙, 작업방법, 기계장치운용방법, 지역생활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농업연수 취업기간 중에는 매월 2시간 이상 작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연수생 건강검진

3. 연수생 관리

가. 농업연수생 인수 및 외국인 등록 신청

• 농업경영체는 농협중앙회가 정하는 장소와 일정에 맞추어 송출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인수하며 연수생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 등록시에는 다음

신 청 서 류

- 외국인등록신청서
- 연수확인서
- 각서
- 연수업체추천서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연수생사진3장
- 연수생건강진단서
- 연수생여권
-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가입증명
- 발급수수료(1만원/명)



특 집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손까지 부족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6월 말이면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들이 우리 나라 농업연수생으로 힘찬 첫발을 내딛게 된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배정받는 농업경영체는 연수생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나라 농업인과 연수생의 생활, 문화, 관습은 달라도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간애를 발휘한다면 그들도 우리 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 주리라 생각한다.

• 농업연수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국후 5일 이내에 농협중앙회는 연수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농업경영체에 배정된 이후에는 농업경영체부담으로 관내 보건소 또는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수생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체는 건강검진 결과 농업연수에 장애가 되는 신체이상 또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법정전염병 에이즈 등에 감염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진단서를 붙여 농협중앙회 또는 송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 연수생에게 연수수당을

지급한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체는 연수생의 근로소득이 면세점이하이므로 원천징수 의무는 없고 신고서 제출의무만 있음. 또한 상시 고용 평균 인원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세무서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는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액, 지급방법, 관련세금, 보험료 등 법정공제에 관하여 연수생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람

마. 연수생 변동사항 신고

• 농업연수생을 고용한 농업경영체는 연수생의 이탈 또는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 및 농협중앙회 그리고 송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바. 연수생의 도주(이탈) 방지 및 신고, 처리

• 농업경영체는 연수생이 연수장소를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연수생이 이탈한 경우 농협중앙회 및 송출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최근 변화되는 양돈업계 제도·변경 양고 대처하자

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연수생 보호

• 연수생은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준거하여 보호를 받으므로 연수생의 생활, 자국의 생활관습, 종교, 문화, 인격을 존중하여 연수생에게 욕설, 구타 등의 모독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 연수생이 언어소통 곤란으로 불편을 호소할 때는 송출기관에 통역을 요청하여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4. 맺음말

•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손까지 부족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6월 말이면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들이 우리 나라 농업연수생으로 힘찬 첫발을 내딛게 된다.

•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배정받는 농업경영체는 연수생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또한 우리 나라 농업인과 연수생의 생활, 문화, 관습은

달라도 외국인농업연수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간애를 발휘한다면 그들도 우리 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 주리라 생각한다.

• 아무쪼록, 외국인농업연수제도를 통해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직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한다. **양돈**

본지 캠페인

~~비선호~~ · 비인기 부위 → 수출 부위